

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더불어민주당 금천 제1선거구 출신 채인목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지금부터 본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055호

「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조례안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개정안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등 유통인에게 출하자를 위한 공적 역할 강화와 공공성 증대 방안 등을 실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수익의 일부를 환원하는 등 공익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매시장의 효율적

운영·관리를 위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존경하는 위원 여러분,

아무쪼록, 이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